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2. 13.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07년 11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7. 11. 30)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박정희)

가. 개정이유

2007. 5.1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문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개정 (안 제1조).
- 법 개정에 맞추어 제2조의 “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 규정도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안 제2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007. 5.11) 제16조에서 자치구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처리한 일이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
----------	-----

제출연월일 : 200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7. 5.1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규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개정(안 제1조)
- 다. 법 개정에 맞추어 제2조의 “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규정도 “20세이상”을 “19세이상”으로 개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 라. 규제심사 : 심 사 필
-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07. 10. 19 ~ 11.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4”를 “제1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3조의4”를 “제16조”로, 같은 조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6조 ----- ----- ----- -----.</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 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제16조 ----- ----- ----- 19세이상 ----- -----.</p>
<p>제3조(생략)</p>	<p>제3조(현행과 같음)</p>